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시험기관 지정신청 변경·철회 절차 마련, 업무재개 절차 보완 등 지정요건 및 절차를 개선하고, 정기검사 확인사항 보완, 수시검사 범위 명확화, 시험 성적서 기재사항 개선 등 시험기관 검사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험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시험업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기관 지정신청 변경·철회 절차 마련 (제4조제5항 신설)

- 신규·변경지정 심사과정에서 신청자 사정 등에 따른 신청사항 변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험기관 시간·비용 부담 경감

나. 시험인력 자격요건 명확화 (제5조제1항)

- 시험인력 자격요건으로 시험경력 외에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관리 규정에 부합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내용을 명문화

다. MRA 시험업무 수행 절차 명확화 (제7조의2 신설, 제12조)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따른 MRA 시험업무 수행 가능 시점을 MRA 체결국 승인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제7조의2),
 - 지정 유효기간 및 지정갱신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제12조)

라. 인력 변경신청 효력 발생 시기 명확화 (제8조제7항 신설)

- 시험인력 변경신청 효력발생 시기를 변경서류 제출 시점으로 명확히 하여 시험기관의 업무 혼선방지 및 신속한 업무수행 가능하도록 개선

마. 시험업무 중지 후 업무재개 절차 명확화 (제9조제1항, 제4항·제5항 등 신설)

- 신청에 따른 업무중지 기간 명확화 및 업무중지 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업무재개 절차를 신설하여 시험업무 수행 체계를 명확히 함

바. 정기검사 보완 및 수시검사 범위 명확화 (제11조제2항제5호, 제3항 신설)

- 정기검사 시 시험성적서 및 관계자료를 필수 확인하도록 보완하고, 수시검사의 실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사.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개선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호)

- 국제표준(ISO/IEC 17025)을 반영하여 시험결과 증빙자료(도표, 그래프 등)를 명확히 하는 등 시험성적서 포함사항을 개선하고,
 - 시험결과 관계자료를 포함한 시험성적서 보관 의무를 명확히 함

아. 비교속련도 수행사항 명확화 (제21조)

- 시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제표준(ISO/IEC 17025)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기관 비교속련도 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자. 지정분야 일부 시험항목 추가 및 무선 시험항목 분리 (별표 1)

-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유선(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및 전자파 적합성(항공기 탑재기기)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 무선분야 RFID/USN용 무선기기 시험항목을 방사/전도 기준으로 분리

차. 조문 번호 수정 및 별지 서식 정비 등

- 참조 조문 번호 수정(제1조, 제8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 제19조, 제24조, 제25조, 별표 2, 별표 3)
- 국가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번호 수정(별표 1/나. 지정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3. 전자과적합성)
- 용어 정비(별표 3 제1호·제4호)
-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3호·제6호·제7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및 제10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7조의12”를 “제77조의13”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시험절차서”를 “시험절차서 및 비교속련도 시험결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신청기관은 현장심사 실시 이전에 원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 종료 전까지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가 중단된 경우 심사가 진행된 날까지의 심사비용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있는 자(단,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전체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를 “있는 자로서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시험인력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있는 자(단,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전체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를 “있는 자로서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시험인력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 실무자 : 전체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나. 기술책임자 : 전체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상호인정협정 체결 국가의 승인) ① 제7조에 따라 원장이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제5호에 따른 변경은 원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보며 해당 변경의 적격성은 제11조에 따른 차기 검사에서 확인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58조의8에에”를 “제58조의8에”로, 같은 항 단서 중 “1년”을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
으로 하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으로, “중지 또는 폐지한”을 “중지, 폐지 또는 업무재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업무중지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중지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중지
기간 만료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해당기관의
지정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4항에 의해 해당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한다.

제1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험성적서 및 관계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2. 부정확한 시험 또는 부적격한 인원, 설비에 의한 시험 수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결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의 제목 “(지정시험기관의 갱신)”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지정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효기간은 원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을 추가로 지정받은 경우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대하여 법 제58조의8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소재지)”를 “소재지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일련번호)”를 “일련번호(해당 페이지/전체 페이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시험신청기자재)”를 “시험신청기자재 접수번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사용한”을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사용한”으로, “설명)”을 “설명) 및 시험 구성도, 시험장비, 시험기자재 출력 등 설정(소프트웨어 등) 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시험결과(측정결과를 대표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도표, 그래프, 차트, 산출계산식 등 해당 사항을 첨부) 및 시험구성(시험기자재 포함) 사진 제15조의2제1항 본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 관계 자료(측정결과를 기록한 문서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제19조 단서 중 “제13조제3항제10호”를 “제14조제3항제10호”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시험기관 또는 실무자 간 비교속련도 시험을 수행하거나 원장이 실시하는 비교속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측정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은 지정받은 분야의 측정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험기관 또는 실무자 간 비교속련도 시험을 수행하거나 원장이 실시하는 비교속련도 시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별표 1] 나. 지정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중 유선 시험항목에 “119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를 신설하고, 무선 시험항목 “251 RFID/USN용 무선기기”를

“251-1 RFID/USN용 무선기기, 251-2 RFID/USN용 무선기기(13.56 Mhz 대역 시험 제외)”로 하며, 전자파적합성 시험항목 “333-1 KS X 3132”를 “333-1 KS X 3127”로, “333-2 KS X 3132”를 “333-2 KS X 3127”로, “344 KS B 6955”를 “344 KS B ISO 8102-1”로, “345 KS B 6945”를 “345 KS B ISO 8102-2”로 하고, 전자파적합성 시험항목에 “353 KS C 9993(항공기 탑재기기)”를 신설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별표 3] 제목 중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호 무선분야 대상기기 중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자재”를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로 하며, 제4호 나목 단말장치류 기자재분류 중 “팩시밀리기자재”를 “팩스기자재”로, “팩시밀리 전용 모뎀카드”를 “팩스 전용 모뎀카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6-xx호, 2026. xx. xx.>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과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 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77조의9부터 <u>제77조의12</u>,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2 또는 법 제58조의8 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3.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요건을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나. (생략)</p>	<p>제1조(목적) ----- ----- ----- ----- <u>제77조의13</u> ----- ----- ----- ----- ----- ----- -----.</p> <p>제4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나. (현행과 같음)</p>

다.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라. (생략)

4.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제5조(지정요건 등) ① 제4조제1항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적합성 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정분야별 실무자 2명 이상(지정분야의 수가 복수인 경우 각 해당 지정분야별로 서로 다른 실무자가 최소 2명은 되어야 함. 다만, 국가별 동일한 지정분야는 인력을 중복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 ----- 시험절차서 및 비교숙련도 시험결과 ---.

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청기관은 현장심사 실시 이전에 원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 종료 전까지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가 중단된 경우 심사가 진행된 날까지의 심사비용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요건 등) ① -----

1. -----

해당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단,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전체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2. (생략)

3. 기술책임자 : 방송통신 지정분야(유·무선 분야는 해당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단,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전체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4.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신설>

----- 있는 자로서 제4조 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품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인력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 자

2. (현행과 같음)

3. -----

----- 있는 자로서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시험인력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 자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 실무자 : 전체 지정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나. 기술책임자 : 전체 지정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상호인정협정 체결 국가의 승인) ① 제7조에 따라 원장이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⑥ (생략)

<신설>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① 법 제58조의5제2항 및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시험업무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5항-----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제5호에 따른 변경은 원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보며 해당 변경의 적격성은 제11조에 따른 차기 검사에서 확인한다.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① -----제58조의8에 -----

-----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한 날로부터 1년 -----
-----.

②·③ (생략)

<신설>

<신설>

④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업무를 중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시험기관의 정기검사 등) ① (생략)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검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업무중지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중지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 자료를 중지기간 만료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해당기관의 지정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4항에 의해 해당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한다.

⑥ ----- 제1항, 제2항 및 제5항-----
----- 중지, 폐지 -----
----- 또는 업무재개한 -----

-----.

제11조(지정시험기관의 정기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시험성적서 및 관계 자료

<신 설>

③·④ (생 략)

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갱신) ①·

② (생 략)

③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2. 부정확한 시험 또는 부적격한 인원, 설비에 의한 시험 수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결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2조(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지정갱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유효기간은 원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을 추가로 지정받은 경우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대하여 법 제58조의8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험성적서 등) ①·② (생략)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 (시험을 행한 장소가 다를 경우는 그 소재지)

4.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및 페이지 일련번호

5. (생략)

6. 시험신청기자재 접수일, 시험기간 및 시험성적서 발행일

7. 사용한 시험방법(품질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

8. 시험결과(필요시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첨부)

9. ~ 12. (생략)

제14조(시험성적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 소재지 포함)

4. -----
일련번호(해당 페이지/전체 페이지)

5. (현행과 같음)

6. 시험신청기자재 접수번호 및 -----

7.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사용한 -----
----- 설명)

및 시험구성도, 시험장비, 시험기자재 출력 등 설정(소프트웨어 등) 조건

8. 시험결과(측정결과를 대표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도표, 그래프, 차트, 산출계산식 등 해당 사항을 첨부) 및 시험구성(시험기자재 포함) 사진

9. ~ 12.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제15조의2(적합성평가지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주기)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의 주기는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단, 별표2의 안테나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제18조(자료의 보관) ①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시험성적서(시험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포함한다)

② (생략)

제19조(자료의 제출) 원장이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위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 시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적합성평가지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주기) ① ----- 제15조-----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자료의 보관) ① -----

1. (현행과 같음)
2.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 관계 자료(측정결과를 기록한 문서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자료의 제출) -----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보완내용은 시험성적서 발급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비교속련도 시험) (생략)

<신설>

<신설>

제24조(처리기간 등) ① 원장은 제22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항공 항행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에 대한 처리기간은 55일,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간은 10일로 한다.

----. ----- 제14조제3항제10호-

제21조(비교속련도 시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시험기관 또는 실무자 간 비교속련도 시험을 수행하거나 원장이 실시하는 비교속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측정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은 지정받은 분야의 측정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험기관 또는 실무자 간 비교속련도 시험을 수행하거나 원장이 실시하는 비교속련도 시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4조(처리기간 등) ① ----- 제23조-

-----.

② (생 략)

제25조(수수료 등) ① 제22조에 따
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별표 1]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제3조 관련)

가. (생 략)

나. 지정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지정분야	시험항목
1. 유선	101~118 (생 략) <신설>
2. 무선	201~250 (생 략)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2~272 (생 략)
3. 전자파 적합성	301-1 ~332 (생 략) 333-1 KS X 3132(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333-2 KS X 3132(주파수공용 무선전 화장치/음압시험 제외) 344 KS B 6955(승강기 전자파 장애 방지 시험) 345 KS B 6945(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346 ~ 352 (생 략) <신설>

[별표 2] 적합성평가지험에 필요한
설비의 검사주기

(제14조 관련)

[별표 3] 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

(제24조 관련)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수료 등) ① 제23조-----

-----.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제3조 관련)

가. (현행과 같음)

나. 지정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지정분야	시험항목
1. 유선	101~118 (현행과 같음) 119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2. 무선	201~250 (현행과 같음) 251-1 RFID/USN용 무선기기 251-2 RFID/USN용 무선기기(13.56 Mhz 대역 시험 제외) 252~272 (현행과 같음)
3. 전자파 적합성	301-1 ~332 (현행과 같음) 333-1 KS X 3127(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333-2 KS X 3127(주파수공용 무선전 화장치/음압시험 제외) 344 KS B ISO 8102-1(승강기 전자파 장애방지 시험) 345 KS B ISO 8102-2(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346 ~ 352 (현행과 같음) 353 KS C 9993(항공기 탑재기기)

[별표 2] 적합성평가지험에 필요한
설비의 검사주기

(제15조 관련)

[별표 3] 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

(제25조 관련)

1. 무선분야(구 형식검정)

대상기기	수수료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자재	619,300

4. 유선분야

가. (생략)

나. 단말장치류

기자재분류	수수료
팩시밀리기자재	432,800
팩시밀리 전용 모델카드	432,800

1. 무선분야(구 형식검정)

대상기기	수수료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	619,300

4. 유선분야

가. (현행과 같음)

나. 단말장치류

기자재분류	수수료
팩스기자재	432,800
팩스 전용 모델카드	432,800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 작성하는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별지에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즉시 <input type="checkbox"/> 60일(현장심사의 경우)
------	------	------	---

신청기관	기관명(지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1. 추가

국가	<input type="checkbox"/> 국내 <input type="checkbox"/> MRA (해당국가 수기로 작성)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input type="checkbox"/> 지정분야	수기로 작성	수기로 작성
<input type="checkbox"/> 시험항목	수기로 작성	수기로 작성

2.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기관대표주소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시험장주소	
<input type="checkbox"/> 시험설비	
<input type="checkbox"/> 시험환경조건	
<input type="checkbox"/> 품질책임자	
<input type="checkbox"/> 기술책임자	
<input type="checkbox"/> 실무자	
<input type="checkbox"/> 품질관리규정	

3. 중지/폐지/업무재개

구분	분야/항목	사유	중지기간/폐지일자/업무재개일자
<input type="checkbox"/> 중지 <input type="checkbox"/> 폐지 <input type="checkbox"/> 업무재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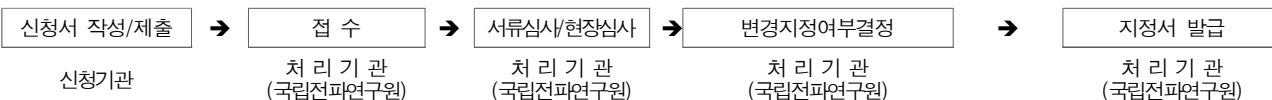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확보 현황 1부(필요시)	수수료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지정분야 추가는 사업계획서 포함)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영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4.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필요시)	
	5. 지정서 원본(필요시)	

처리절차



[별지 제6호서식]

적합성평가시험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55일
①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신청 기자재	기자재명 (기기명)	모델명 (형식명)	
	기기부호 (형식기호)	용도	
제조사	상호(명칭)	제조국	
	주소		

신청분야 [] 유선 [] 무선 [] 전자파적합성 [] 전자파흡수율 [] 전자파강도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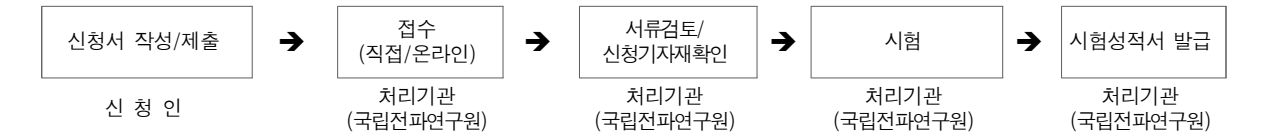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사용자설명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될 것)	수수료
	2. 외관도(제품 전체 외관도) 3.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함. 단, 전자파적합성 시험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제24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험을 신청한 경우 작성

②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③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④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⑤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⑥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

[별지 제7호서식]

표본검사 결과 보고

표본검사 현황

표본 기간

표본 비율

시험 실적

표본검사 결과

상호명

기기명

모델명

시험분야

적/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정시험기관명(대표자)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